

●산업통상부고시 제2026-33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라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및 과잉수출제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10일

산업통상부장관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및 과잉수출제한에 관한 규정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및 과잉수출제한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실소비자”란 석유정제업자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직접 소비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조달청장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계약체결 요청에 따라 체결한 계약에 근거하여 석유정제업자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서 정하는 수요기관에 석유제품을 공급하여 그 수요기관이 이를 직접 소비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수요기관은 제외한다.

제4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⑦ 석유정제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면세 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석유제품 중 제3조 제1항에 따라 석유판매가격 최고액 지정의 대상이 되는 석유제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면세 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이후의 금액을 최고액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산업통상부장관은 국제석유제품가격의 변동성, 국내석유제품 수급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이 고시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폐지하여야 한다.

◇개정이유

「조달사업법」에 따라 체결한 계약에 근거하여 국가기관에 석유제품 공급 시 실소비자에서 제외됨을 명시하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면세 등이 적용될 경우에는 적용 이후의 금액을 최고액으로 함을 명확히 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조달사업법」 제11조의 계약체결 요청에 따라 제2조 체결한 계약에 근거하여 석유정제업자가 「조달사업법」 제2조제5호에서 정하는 수요기관에 제품 공급시 실소비자에서 제외(안 제2조제6호) 나.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면세 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석유제품은 면세 또는 영세율이 적용 된 이후의 금액을 최고액으로 함(안 제4조제7항)

<산업통상부 제공>